

## 우수논문 선정 및 시상규정

2015. 10. 2. 제정

**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(사)한국유통법학회 정관 제4조 제5호에 근거하여 유통법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논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우수논문 대상 및 추천)** ① 우수논문은 심사일 현재 최근 1년간 ‘유통법연구’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선정한다.

② 본회 회원과 고문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우수논문 심사대상을 추천할 수 있다.

**제3조 (우수논문 평가위원회 구성)** 우수논문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위원 전원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.

**제4조 (우수논문 심사 및 선정)** ① 평가위원회는 추천된 각 논문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. 이 경우 유통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
② 평가위원회는 그 평가에 기초하여 우수논문 1편을 최종 선정한다.

**제5조 (우수논문 시상)** ①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은 본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실시한다.

② 우수논문 수상자에게는 수상 상패·상금을 수여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